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62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김소희·권영세·김형동

우재준 • 이헌승 • 김선교

장동혁 • 이종배 • 구자근

안상훈 · 김예지 · 서범수

정연욱 · 김대식 · 주진우

한지아 · 신동욱 · 박수민

김상훈 · 조정훈 · 서지영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 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탄소중립 시설의"로 한다.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시설" 이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 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시행 전 당해연도의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	

다.

1) · 2) (생략)

<신 설>

나. (생 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 2) (현행과 같음)
-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
 소포집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시 설"이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견기 업은 100분의 20, 중소기 업은 100분의 25)에 상당
 하는 금액

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	------	-----

<u> </u>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탄소
중립시설의	